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이 한 주¹⁾ · 강 희 선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및 수호에 대한 국가적 이념의 실체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내용을 헌법 제 36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의료법 및 기타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제정하여 구체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법과 보건의료관계법령은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기준을 설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 전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법제처, 1999). 그러므로 체계화된 보건의료법령에 의료인들의 책임과 권한, 의무, 업무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의료의 대상자인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관련법들의 모법의 기능을 하는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후, 2004년 5월까지 총 24차례 개정되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행위의 감독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의료법은 의료인 5개 직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므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김계현, 2001), 의료법 하나로 의료인의 업무를 모두 다루는 전근대적인 법률 체계의 상황

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미비한 법 때문에 현실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문국진, 1985)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관계인들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질 수 밖에 없는 추세이므로 일본과 같이 각 의료인 종별로 개별법을 두는 것이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이호용, 2003).

대한간호협회에서는 1977년부터 현 의료법이 의료인 직종의 개별적 특수성 및 독자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하며 간호의 적정성을 확립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목적(김신아, 2004; 대한간호협회, 1997)으로 간호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여 왔다. 이에 1999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간호법(안)을 작성하였고(김의숙 등, 1999), 다시 이 안을 기초로 2002년에는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완성하여(고일선, 김의숙과 김기경, 2002), 이를 정부나 국회에 제안함과 동시에 2003년부터 제정활동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간호 단독법은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은 간호사와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행된 일련의 법안 구성 및 법 제정 과정에서 해당 법률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될 간호사, 간호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사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의

주요어 : 인식, 간호(사)법, 제정, 간호사, 간호학생

* 간호 단독법은 2005년 4월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간호사법으로, 2005년 8월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이 간호법으로 발의한 상태이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통틀어 간호(사)법으로 명기하였다.

1) 존스 홉킨스대 간호대학 박사후연구원(교신저자 E-mail: dalbich@hanmail.net)

2)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투고일: 2006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06년 8월 1일

타당성은 논리적 근거와 관련 집단에 대한 설득 작업을 통해서도 획득될 수 있지만, 해당 정책 수요자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을 때 비로소 그 기반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단독법 제정이라는 일련의 정책적 활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 간호학생들의 간호 단독법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간호 단독법에 대한 정보 습득 유·무에 따라 간호사, 간호학생의 법 제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향후 간호협회의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서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홍보와 여론 수렴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인식을 파악하고, 법 제정과정에 대한 정보 습득 유·무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향후 간호정책 활동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간호사, 간호학생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 및 간호학생들의 간호(사)법 정보 습득 유·무와 그 경로 및 선호하는 정보 습득 방법을 파악한다.
- 간호사 및 간호학생들의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지도와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다.
- 간호사 및 간호학생들의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와 기대정도를 조사한다.
- 간호사 및 간호학생들의 간호(사)법 제정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다.
- 정보 습득 유·무에 따라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간호사, 간호학생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한민국 간호사, 간호학생이지만, 설문 조사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대한간호협회에 이메일을 등록한 간호사와 간호학생으로 표본을 한정하고, 총 60,097명을 대상으로 2006년 1월 18일에서 2월 17일까지 총 3회에 걸

쳐 이메일로 설문을 발송하였다. 발송된 설문은 총 2,381건(4%)이 회송되었으며, 이 중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3부를 제외하고 총 2,328건의 설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설문지는 이메일 수신자가 원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회신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본 메일의 회신은 연구대상자가 동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었으며, 응답된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의 참여는 자율적임을 밝혔다.

도구 개발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 본인의 간호(사)법 제정과정에서의 경험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25개의 기초문항을 개발하였으며, 5명의 간호사와 3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뜻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수정하였고, 2인의 간호학박사와 간호(사)법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개발된 25문항 중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6개 문항은 삭제한 후에, 최종 19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5문항), 간호(사)법에 대한 정보 습득 및 경로(3문항),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전반적인 인지도(1문항), 교육 요구도(1문항), 필요성 및 기대정도(14문항),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매우 그렇다(5)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Likert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문항에 대해 잘 모르겠다 라고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0점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인 문항의 평균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78 이었다.

자료수집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협회에 등록된 회원과 등록 학생들 60,097명에게 이 메일을 발송하여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링크된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바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1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메일을 보내 설문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설문은 1회 발송될 때 약 44,000통이 성공적으로 발송되고, 16,000통이 발송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의 원인은 메일 주소가 틀렸거나, 수신을 거부한 경우, 용량이 꽉 찬 경우, 해당메일 서버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회송된 설문은 PHP* 프로그램을 통하여 MySQL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인터넷 설문지 총 2,328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연령 등 일반적 사항과 정보 습득여부와 경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각 문항 당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간호(사)법 정보 습득 유·무에 따른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 및 기대정도,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는 t-test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32.5세, 최저 연령 20세에서 최대 연령 67세로 나타났다. 연령의 분포는 29세 이하가 1166명(50.3%)으로 본 조사결과의 반수를 차지하였고, 30-39세 632명(27.2%), 40-49세 370명(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대다수가 여성(98.4%)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28)

특성	구분	빈도 (%)	M±SD		
연령	≤29	1,166(50.3)	32.5 ±8.98		
	30-39	632(27.2)			
	40-49	370(15.9)			
	≥50	152(6.6)			
성별	남	37(1.6)	2,276(98.4)		
	여	2,276(98.4)			
신분	간호학생	408(17.6)	1,914(82.4)		
	간호사	1,914(82.4)			
근무처	의료기관	1,447(75.6)	107(5.6)		
	보건기관	107(5.6)			
	산업장보건실	33(1.7)			
	학교보건실	49(2.6)			
	교육기관	64(3.3)			
	시설(보건 및 복지)	72(3.8)			
	무직	101(5.3)			
	기타	41(2.1)			
	근무기간	≤5		754(39.4)	10.21±8.168
		5 - 10		418(21.9)	
11 - 20		493(25.8)			
> 20		247(12.9)			

* 무응답을 제외하고 백분율 산출.

* PHP : Professional HTML Preprocessor의 약자로 html 문서 내부에 포함되어 웹서버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할 수 있다.

이었고, 17.6%가 간호학생, 82.4%가 간호사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무부서는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수(75.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보건기관(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근무부서는 낮은 분포도를 보였으며, 기타 항목으로는 공무원, 제약회사, 기업체 사무직, 구치소 의무과 등이 제시되었다. 총 근무경력 5년 이하가 가장 많았고(39.4%), 11년에서 20년 사이의 근무경력자 25.8%, 5년에서 10년 사이의 경력자 21.9%로 나타났다. 21년 이상의 경력자도 12.9%를 차지하면서 참여자들의 평균 직장경력 10.21년으로 조사되었다.

근무 및 주거지역은 주로 서울(714명, 31.3%), 경기(410명, 17.8%)이었고, 부산 194명(8.4%), 대구 109명(4.7%), 인천 100명(4.3%), 광주 104명(4.5%), 대전 88명(3.8%), 울산 69명(3.0%), 강원 49명(2.1%), 충북 56명(2.4%), 충남 74명(3.2%), 전북 96명(4.1%), 전남 57명(2.4%), 경북 83명(3.6%), 경남 75명(3.2%), 제주 19명(0.8%)으로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

● 간호(사)법 정보 습득 유·무 및 경로

응답자들이 간호(사)법에 대해 정보를 받은 적이 있는 지와 정보를 받은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만약 더 간호(사)법 제정에 관해 알기를 원한다면 어느 방법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응답자들 중 1704명(73.5%)이 간호(사)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 중 1184명(69.5%)은 주로 협회 매체인 간협신보(1회/1주 발행), 대한간호(1회/2달 발행), 홈페이지, 각종 유인물을 통해 간호(사)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보수교육(8.3%), 공청회, 정책토론회 및 학술대회(8.1%), 타 단체 홈페이지나 인터넷 뉴스(7.6%)를 통해서도 정보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정보 습득 경로를 조사한 결과, 111명 중 106명(95.5%)이 학교에서 의료법규나 간호행정학 수업시간에 정보를 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앞으로 간호(사)법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한간호협회의 매체(1218명, 38.4%)나 보수교육 프로그램(816명, 25.7%), 공청회, 정책토론회, 학술대회 등(579명, 18.3%), 인터넷 뉴스(516명, 16.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 기타 답변내용으로 간호(사)법 제정과정에 대한 상시적인 이메일 제공, 협회에서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문 교육, 자료집 및 전단지 배포, 학교 강의, 보수교육 필수과목화 등이 선호하는 정보 제공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간호(사)법에 대한 인지도 및 정보 요구도

<표 2> 간호(사)법 정보 습득 유·무 및 경로

문항	구분	빈도 (%)
간호(사)법 정보 제공받은 적이	있다	1,704(73.5)
	없다	613(26.5)
간호(사)법 정보 제공 경로	공청회, 정책토론회, 학술대회 등	138(8.1)
	보수교육	141(8.3)
	협회 매체(간협신보, 대한간호, 홈페이지, 유인물 등)	1,184(69.5)
	타 단체 홈페이지나 인터넷 뉴스	130(7.6)
	기타(학교 수업)	111(6.5)
선호하는 정보 습득 경로/방법*	공청회, 정책토론회, 학술대회 등	579(18.3)
	보수교육	816(25.7)
	협회 매체(간협신보, 대한간호, 홈페이지, 유인물 등)	1,218(38.4)
	타 단체 홈페이지나 인터넷 뉴스	516(16.3)
	기타(이메일, 보수교육, 기관방문 등)	40(1.3)

* 4개까지 복수 응답 ** 무응답 제외하고 백분율 산출

응답자들은 '제정될 간호(사)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문항에 2.44의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더 알기를 원한다'는 문항에는 4.28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표 3>.

<표 3> 간호(사)법에 대한 인지도 및 정보 요구도 (N=2,328)

문항	M±SD
나는 제정될 간호(사)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2.44±1.269
나는 제정될 간호(사)법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	4.28± .701

● 간호(사)법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기대 정도

응답자들은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 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제시할 법률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4.63±0.668로 제일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 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동등한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점(4.45±0.583),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간 책임관계가

불명확'한 점(4.31±0.968), '현 의료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점(3.96±1.289)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또한 응답자들은 위 필요성들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의 간호(사)법이라는 단독법을 제정하기보다 '현 의료법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문항에는 2.44점으로 현 의료법의 수정·보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간호(사)법 제정이 '시기상조이다'(1.57±1.147), '보건의료법률 체계의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다'(1.67±1.046)라는 문항'에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발생할 결과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대정도를 조사하였다. 이에 응답자들은 '간호사의 법적 책임이 더 무거워질 것이다'(3.59±1.207), 또는 '간호사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3.93±1.053)보다는 '분야별 전문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보다 분명해져서 전문 간호사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문항에 가장 높은 점수(4.45±0.778)를 보였

<표 4> 간호(사)법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기대정도

(N=2,328)

문항	M±SD
현 의료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	3.96±1.289
현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간 책임관계가 불명확하다.	4.31± .968
전문 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제시할 법률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4.63± .668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 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동등한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45± .583
간호(사)법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1.57±1.147
간호(사)법 별도 제정보다 현 의료법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4±1.583
간호(사)법 별도 제정은 보건의료 법률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다.	1.67±1.046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법적 책임이 더 무거워질 것이다.	3.59±1.207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서 환자와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4.22± .919
분야별 전문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보다 분명해져서 전문 간호사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4.45± .778
법으로 간호전문직의 교육과 실무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4.29± .846
간호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3.93±1.053
나는 간호(사) 법 제정을 지지한다.	4.55± .758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	4.25± .889

으며 '법으로 간호전문직의 교육과 실무를 규율할 수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환자와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문항 순으로 기대정도를 나타냈다.

총괄적으로 응답자들이 간호(사)법 제정을 지지하는 정도는 평균 4.55±0.758점이었으며,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기대 정도는 평균 4.25±0.889점으로 응답자들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 강한 지지와 큰 기대를 보였다.

● 간호(사)법 제정의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은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는 '간호단체의 정치적 협상능력'을 우선으로 꼽았으며(4.09±0.952), '타 단체의 협조', '국민적 합의'순으로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있었다<표 5>.

정보 습득 유·무에 따른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 차이

간호(사)법 정보 습득 유·무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

았다<표 6>. 총 19문항 중 2문항을 제외한 17문항에서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집단과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제정될 간호(사)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문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고($p=.000$),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는 집단이 '간호(사)법에 관해 더 알기를 원한다'는 문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p=.000$). 그리고 '현 의료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 '현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간 책임 관계가 불명확하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제시할 법률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동등한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정보를 접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p=.000$). 그러나 '간호(사)법 제정이 시기상조'이고 '별도의 법 제정보다 현 의료법을 수

<표 5> 간호(사)법 제정의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도

(N=2,328)

문항	M±SD
간호(사)법 제정에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3.76±1.050
간호(사)법 제정에는 타 단체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3.81±.945
간호(사)법 제정에는 간호단체의 정치적 협상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4.09±.952

<표 6> 정보 습득 유·무에 따른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 차이

(N=2,328)

문항	M±SD		p
	유	무	
나는 제정될 간호(사)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2.83±1.132	1.36±.976	.000
나는 제정될 간호(사)법에 관해 더 알기를 원한다.	4.27±.709	4.33±.680	.000
현 의료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	4.12±1.130	3.53±1.574	.000
현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간 책임관계가 불명확하다.	4.38±.868	4.09±1.183	.000
전문 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제시할 법률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4.68±.595	4.52±.832	.000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 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동등한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41±.774	4.16±1.044	.000
간호(사)법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1.52±1.081	1.71±1.285	.000
간호(사)법 별도 제정보다 현 의료법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5±1.556	2.71±1.622	.000
간호(사)법 별도 제정은 보건의료 법률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다.	1.65±1.032	1.72±1.087	.051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법적 책임이 더 무거워질 것이다.	3.65±1.178	3.42±1.266	.000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서 환자와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4.28±.852	4.05±1.071	.000
분야별 전문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보다 분명해져서 전문 간호사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4.51±.694	4.29±.958	.000
법으로 간호전문직의 교육과 실무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4.35±.777	4.12±.998	.000
간호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4.00±.995	3.73±1.183	.000
간호(사)법 제정에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3.88±1.007	3.73±1.055	.007
간호(사)법 제정에는 타 단체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3.90±.896	3.79±.955	.034
간호(사)법 제정에는 간호단체의 정치적 협상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4.08±.955	4.09±.951	.928
나는 간호(사)법 제정을 지지한다.	4.64±.620	4.32±1.019	.000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	4.35±.766	3.98±1.111	.000

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문항에는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발생할 결과에 대한 기대 정도는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간호(사)법 제정의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간호단체의 정치적 협상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그 외 '국민적 합의'나 '타 단체의 협조' 문항에는 역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집단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외에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법 지지도나 기대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p=.000$).

논 의

간호(사) 법 제정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관심과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제정될 간호(사) 법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살펴보면 전체 82.4%가 간호사였으며, 29세 이하가 50.3%로 본 연구 응답자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대한간호협회 회원의 이메일을 활용한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간호사이면서 인터넷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젊은 층의 참여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간호(사)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도를 가진 사람들이 설문에서 더 응답할 선택편견(selection bias)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가 대한민국 간호사, 간호학생들의 간호(사)법 제정에 관한 기본적 인식을 조사한 전국적인 조사라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은 75.6%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협회 회원의 86.7%(대한간호협회, 2005)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대한간호협회의 회원이 서울, 경기, 부산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 외 지역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 응답자들도 현재 회원의 지리적 분포도와 유사한 비율을 보여서 본 연구의 응답자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결과가 표본 추출에서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법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단지 응답자의 73.5%만이 간호(사)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고, 나머지 약 26.5%는 간호법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간호계 내에서도 회원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법이 향후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대한 기준과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때, 간호사들의 간호(사)법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의료기관 행정 담당자들의 법적 소양의 수준과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Henson, Burke, Crow and Hartman(2005)도 의료업무 종사자들이 변화하는 법적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무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법률 지식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법의 당사자인 간호사들에게 간호(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향후 법 제정 시 그 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계속적 수정, 보완을 위한 여론 수렴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응답자들의 정보 습득 출처 및 향후 정보매체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대한간호협회의 매체인 간협신보, 대한간호, 협회의 홈페이지, 또는 협회 유인물 등을 통해서 간호(사)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69.5%). 특이한 것은 간호학생들은 학교의 의료법규 시간이나 간호관리학 시간을 통하여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와 관련된 정책 입안 및 결정 시 학계와 긴밀한 연계 속에 간호학생들에게도 미리 홍보와 교육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방식으로 협회의 매체, 보수교육, 학술대회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좀 더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간호(사)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기타 답변으로 간호(사)법 제정과정에서 상시적인 이메일 제공, 협회에서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시행하는 교육, 자료집 및 전단지 배포, 학교 강의, 보수교육 필수과목화 등이 정보 제공 경로로 필요하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이는 정보가 소외되기 쉬운 집단을 파악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 및 교육 방법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제정될 간호(사)법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 않았고(2.44 ± 1.269) 더 알기를 원했다(4.28 ± 0.701).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간호와 관련된 이슈와 법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므로(Boswell, Cannon, & Miller, 2005)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간호전문인들이 간호(사) 법 제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응답자들은 전문간

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점(Kang, 2005) 때문에도 간호(사)법이 제정되어야 하지만, 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전문 간호사의 법적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간호서비스의 전문화에 부응하여 2000년 분야별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3년 전문간호 분야가 기존 4개에서 10개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령 제 26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전문간호사가 일반 간호사와 어떤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전문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는 법적 소송시 논란의 소지를 발생시키고 있다(이한주, 2004). 실제로 전문간호사의 활용도가 높은 외국에서조차 전문간호기술의 개발 및 활용이 법적인 소송에 연루될 위험을 동반하게 되므로 이를 보장할 입법이 필요함을 제안(Clegg, 2001)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간호(사)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동등한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두 번째로 인식하고 있었다. ICN은 전 세계적인 간호사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의료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의 면허, 질적 관리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존재해야 함을 지적하였다(Styles & Affara, 1997). 이는 현 보건의료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주로 쟁점화 되고 있는 mode 4 의료인력의 교역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자격인정, 이를 위한 면허관리체계의 정비가 핵심적이라는 정책 제안(송영관, 2005)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5개 직종을 하나의 의료법으로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면허인정 및 관리에서 상이한 수준의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 5개 직종을 차별화하여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선진각국이 간호의 정의, 간호업무의 범위, 면허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 간호 단독법을 별도로 제정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질적 규제 확립을 위한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와 달리 응답자들은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보건의료 법률체계를 혼란시키거나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간호(사)법은 다른 보건 의료 인력들에게 부분적 영향을 미치고 법체계의 재정비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점을 찾도록 하여 보건의료관련 법률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김신아, 2004)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은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보다 분명해져서 전문간호사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문항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법으로 간호전문직의 교육과 실무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의료인에 대한 법률은 면허제도와 마찬가지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들이 국민에게 훌륭하고 유능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체계로 기능하는 것이다(Affara, 2004). 즉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간호 업무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간호사들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을 제공하므로(Alley, Marrs, & Schreiner, 2005) 간호서비스의 대상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간호 단독법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응답자들은 법 제정의 실익으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서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현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요양상의 간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부분의 간호의 업무가 진료보조업무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독자적인 간호사의 업무조차도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로 보아 의료과오시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관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김기경, 2000). 그러나 최근 들어 간호사의 과오(예를 들면 각종 주사관련 과오)에 대하여 간호사의 적극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시, 감독 하의 진료보조 업무가 아니라 간호사 단독 업무로 인정하기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의료행위에 있어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수행을 사법부가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유선미, 2004). 문국진(1985)은 간호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법이 마련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간호업무, 간호행위 및 간호사를 위한 단독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 하나로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업무를 모두 다루는 전근대적인 법을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미비한 법 때문에 실제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내용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은 끊임없이 제기(이경환, 2004)되어 오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전문인자 신분만 아니라 의료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전문직, 특히 의료전문직에서 매우 중요하다(Flook, 2003). 법에 간호업무의 범위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팀으로 활동하는 의사나 환자에 대한 적

극적 보호로 이어지므로 간호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령체계의 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 강한 지지와 큰 기대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조직적 차원에서는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역할한계와 책임규명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전문직 단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향도 받게 된다.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서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는데 응답자들은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서는 '간호단체의 정치적 협상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법 제정과정에서 끊임없는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설득과 협상이 요구된다는 것을 참여자들이 잘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타 단체의 협조도 중요하므로 일반인 및 타 전문인들이 보다 지지적일 수 있도록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설득 및 정서적 공감대 획득 작업이 법 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사)법에 대한 정보 습득 유·무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서는 총 19문항 중 2문항을 제외한 17문항에서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집단과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정도로 정보 습득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현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 및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작업을 병행한다면 실제 법이 제정되었을 때, 법의 규범력과 설득력을 높이고, 이들의 대처 또한 원활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제정될 간호(사)법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 '간호(사)법 별도 제정으로 보건의료법률 체계를 혼란시키거나 관련 단체들 간의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항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정보 제공 유무에 관련 없이 이미 제정될 간호(사)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간호 단독법 제정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보건의료법률 체계 혼란이나 관련 단체들 간의 충돌과 혼란 야기라는 부정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결론 및 제언

간호사 및 간호학생들의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유·무와 습득 경로 및 선호하는 정보 습득 방법, 그리고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체 응답자들 중 1704명(73.5%)이 간호(사)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다. 이들 중 1184명(69.5%)이 주로 협회의 매체인 간협신보(1회/1주 발행), 대한간호(1회/2

달 발행), 홈페이지, 유인물을 통해 간호(사)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앞으로 더 정보습득을 원한다면 역시 대한간호협회의 매체(1218명, 38.4%)나 보수교육 프로그램(816명, 25.7%) 등을 선호 경로로 제시하였다.

- 응답자들은 '제정될 간호(사)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문항에 2.44의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더 알기를 원한다'는 문항에 4.28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응답자들은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 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제시할 법률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제일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분야별 전문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보다 분명해져서 전문 간호사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 높은 지지(평균 4.55±.758점)와 기대(평균 4.25±.889점)를 보였다.
- 응답자들은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호단체의 정치적 협상능력'을 제시하였다.
- 간호(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던 집단이 법 제정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간호(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며 더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법 제정에 관해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이 어떤 경로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본 조사를 기초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추가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거나 기회가 없어서 간호(사)법 제정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간호(사)법 제정이 간호사의 역할확대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노력은 간호사,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사)법에 대해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간호(사)법을 제정하는데 긍정적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사)법 제정이 간호계의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생이나 간호사들이 법 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발송되어진 건수에 비해 저조한 응답률은 연구 활용에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간호(사)법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으므로 지역별로 간호(사)법을 교육할 강사와 홍보팀을 구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것

을 제언한다. 또한, 일반인과 타 전문인들의 간호(사) 법 제정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고일선, 김의숙, 김기경 (2002). 간호법시행령, 시행규칙(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41(4), 65-76.
- 김계현 (2001). *한국과 일본 의료법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경 (2000, 6월).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관련법, 판례와 행정처분 사례 중심*. 간호윤리와 법 학술세미나 제출 원고, 서울.
- 김신아 (2004).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의숙, 고일선, 김인숙, 김주희, 김기경, 이태화, 강경화, 이춘옥, 이한주 (1999). *간호법(안)*. *대한간호학회지*, 38(2), 66-74.
- 대한간호협회 (1997). *대한간호협회 70년사*. 서울 : 대한간호협회.
- 대한간호협회 (2005). *대한간호협회 통계연보*. 서울 : 대한간호협회.
- 문국진 (1985). *간호법의학*. 서울 :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
- 법제처 (1999). *대한민국 법제 50년사*. 법제처 : 서울.
- 송영관 (2005).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선미 (2004). *간호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환 (2004). *법적책임에 따른 간호행위 분류와 간호판례의 검토*. 2004년도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연세집, 서울.
- 이한주 (2004, 7월).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간호법 입법*. 보건 의료법률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공청회 제출 원고, 서울.
- 이호용 (2003). 일본의 의료시스템과 의료법체계. *법과 정책연구*, 3(1), 51-75.
- Affara, F. A. (2004). *Protecting the public through professional regulation of nursing*. Draf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health and medicine.
- Alley, N. M., Marrs, J., & Schreiner, B. (2005). Nurses' promise to safeguard the public: Is it time for Nationally mandated background checks? *JONAS Healthc Law Ethics Regul*, 7(4), 119-124.
- Boswell, C., Cannon, S., & Miller, J. (2005). Nurses' political involvement: responsibility versus privilege. *J Prof Nurs*, 21(1), 5-8.
- Clegg, A. (2001). Advanced nursing practice in intermediate care. *Nurs Stand*, 15(30), 33-35.
- Flook, D. (2003). The professional nurse and regulation. *J Perianesth Nurs*, 18(3), 160-167.
- Henson, S. W., Burke, D., Crow, S., & Hartman, S. J. (2005). Legal and regulatory education and training needs in the healthcare industry. *JONAS Healthc Law Ethics Regul*, 7(4), 114-118.
- Kang, Y. (2005). Development of advanced practice nurses in South Korea. *Appl Nurs Res*, 18, 226-228.
- Styles, M. M., & Affara, F. A. (1997). *ICN on regulation : Towards 21st Century model*. Geneva.

The Perception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Lee, Han ju¹⁾ · Kang, Hee Sun²⁾

1) Post-Doc. School of Nursing, Johns Hopkins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Method:**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1914 nurses and 408 nursing student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Results:** Most of respondents (73.5%) had received the information on nursing law legislation mainly through the nursing news letter, nursing magazine(Taehan Kanhoo), and Korean Nurses Association internet homepage. However, they expressed they did not know sufficiently about the nursing law legislation and wanted know more about it. They strongly supported the nursing law legisl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the people who had a chance to know about the nursing law legislation and who did not. **Conclusion:** Education should be offered not only to the people who wanted to know more about on nursing law legislation and but also to the people who are not concerned or never had a chance to know about this. It is important to empower nurses and nursing students to be proactive on the issues of nursing law legislation.

Key words : Perception, Legislation, Nursing, Nurses, Students, Nurs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Han ju

School of Nursing, Johns Hopkins University

525 N Wolfe Street, Baltimore, MD, 21205, USA

Tel: 1-443-722-3909 E-mail: dalbich@hanmail.net